

석유제품 규격 및 가격체계 개선 추진계획

- 통상산업부 -

1. 추진배경

- 석유제품은 원유로부터 연산품 형태로 제조되며 그 성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
 - 현행 석유류 품목분류체계에 의하면, 등유는 난방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경유는 난방용, 열원용 및 수송용으로 병행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국내 석유제품 현황〉

유종	'96 소비비중(%)	용도
휘발유	9.4	승용차용
등유	10.2	보일러(난방)용
경유	24.0	수송(차량, 선박) 중·소형보일러(난방, 산업, 발전)용
B-C유	22.6	대형보일러(난방, 산업, 발전, 선박)용
기타	33.8	나프타, 항공유, 아스팔트

- 이러한 분류체계는 경유를 수송용과 Heating-oil로 구분하는 OECD 회원국 등과 상이하여 유류의 효율적 사용, 시장기능에 맞는 가격 체계 형성등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난방용의 경우, 등유는 생산수율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나 소비자들이 경유에 비해 고급유종인 등유를 선호하여 만성적인 수급불안 반복
- 경유는 가격수준이 주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적정수준으로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경유를 열원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농어민 등의 부담 증가로 실효성 있는 가격·조세정책 추진이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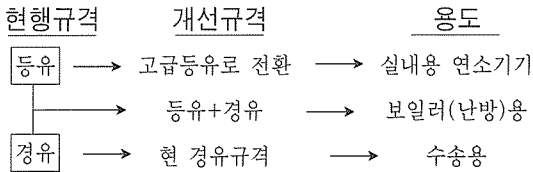
- 따라서 현행 석유류 품목분류 및 가격체계를 개선하여 석유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수급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 대두

2. 기본방향

- 국내 석유수급 안정 및 합리적인 유류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별도의 난방유 신규보급 추진
 - 현재의 경유는 수송용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등유만 사용하는 실내용 연소기기를 위해 현재의 등유 규격은 고급화

- 중·장기 에너지시책과 부합되도록 난방용(열원용) 규격신설에 따른 유종간 가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수송용 경유가격을 단계적으로 OECD비산유국 수준까지 현실화
 - 신규 난방유는 현행 등유가격과 비슷하게 유지하여 중소기업 및 시민부담 완화
 - 고급등유는 신규 난방유와 일정수준의 가격차이 유지

〈석유제품규격 개선체계도〉



3. 주요 추진대책

가. 석유제품 규격 정비

- 소비자의 연료이미지에 적합하도록 난방유는 『등유1호』로 하고 고급등유는 『등유2호』로 분리 고시('98.1월중)
 - 등유1호(보통등유): 현행 등유와 경유의 중간형태로 설정하되 겨울철 저온성능을 강화
 - 등유2호(고급등유): 실내용난방에 적합토록 황분 함량 강화(0.08% → 0.01%)

나. 안정공급체제 구축

◎ 보통등유(난방유)

- 신설 난방유는 기존 등유수요의 약 90% 및 경유 수요의 35% 정도를 흡수할 전망이다

- 현 국내정제시설로 등·경유 유분 공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배합 및 입·출하시설등의 추가 설비 보완 실시

- 난방유 저장 및 수송은 기존의 등유시설을 활용하고
 - 주유소 및 판매소의 기존 등유 탱크 및 주유기를 활용하여 공급

◎ 고급등유

- 난방유 신설시 실내용 연소기기에 사용되는 고급등유의 수요는 현 등유수요의 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현 정제시설등으로 안정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주유소의 경우 기존 등유유통시설의 난방유 전용으로 고급등유의 취급이 제약될 전망
 - 기본적으로 기존 등유판매량의 22.2%를 담당하는 일반판매소를 활용하여 공급
 - 저장시설에 여력이 있고 고급등유 취급을 희망하는 주유소는 고급등유 판매 병행

다. 신규 난방유의 타용도 사용 방지

- 장기적으로 경유가격 상승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유를 차량용등유로 사용할 경우 난방유 수급불안 및 조세회피에 따른 세수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 경유가격을 난방유 보급 추이에 맞춰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난방유에 착색제 및 식별제를 첨가하여 구분이 용이토록 조치
 - 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능력을 보강하여 품질검사 및 유통단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98년중 석유품질검사소의 인력 및 검사장비 보강 실시

라. 소비자 홍보의 체계적 추진

- 보일러 연료 소비자가 난방유 소비로 조기 전환토록 계도하고
 - 난방유를 차량등에 사용시 엔진성능 저하와 차량마모 등으로 차량수명이 단축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
- 석유협회 중심으로 『난방유 홍보대책반』을 운용하여 체계적 홍보 실시
 - 구성 : 석유협회(주관),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보일러공업협동조합, 에너지관리공단

마. 난방유 가격수준 설정

- 보통등유(난방유)에 대해서는 현행 등유 조세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격수준을 비슷하게 설정하고
 - 고급등유에는 판매부과금 등을 활용하여 보통등유와 일정격차를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통등유의 소비를 유도('98년 상반기중 재경원과 협의하여 결정)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가. 기대효과

- 석유수급 불안요인의 획기적 해소
 - 구조적 공급부족 유종인 등유 소비 감소로 석유수급 안정 도모
- 국제수지 개선효과
 - 상대적으로 고가인 등유 수입 감소로 국제수지 개선(연간 약 1.2억달러)

- 자원 낭비 방지 및 에너지 소비절약 효과
 - 등유에 비해 열량이 높은 경유사용 촉진

나. 추진일정

- '97.10: 석유제품 규격 및 가격체계 개선계획 확정
 - 정유사·유통업체 공급준비 지시
- '97.10~12: 난방유 규격 실증실험
- '98.2: 석유품질기준 개정 고시
- '98.3: 주요 외국의 난방유 가격체계 조사
- '98.5: 난방유 가격체계 개선안 마련 및 재경원 협의
- '98.8.1: 규격 이원화 시행(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9.1일부터 본격 공급) 

■ 해외석유산업 ■

필리핀, 석유산업자유화법 서명

필리핀의 라모스대통령은 지난 2월10일 석유산업자유화법에 서명하였다. 이법은 가까운 시일내에 발효될 예정이며, IMF의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정부의 가격통제나 참입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리핀정부는 작년 이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작년 11월에 최고재판소가 「헌법위반으로 무효」로 선언하여 개혁이 지체되고 있었다. 필리핀 정부는 IMF와의 차기개혁프로그램 교섭을 앞두고 있어, 이 법은 예외적으로 빠르게 제정되었다.

이번 법률에서는 앞서 위헌으로 판시된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의 차이를 해소했다. 동시에 법률의 발효후 5개월간을 자유화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페소화 안정에 따라 석유제품가격의 급등을 억제하는 특례조치나 가격카르텔의 방지등을 입안하였다.